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9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도가 설치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공채매입 대상을 축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투자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기금융자 대상범위 확대

- 상·하수도, 토지 및 주택개발,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용자하던 것을
- 정보통신기술(IT), 생명공학기술(BT), 향토지적재산육성 사업 등에도 용자 할 수 있도록 함. (제8조)

○ 기금융자 상환조건 개선

- 융자조건이 상·하수도사업 '2년거치 10년',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'3년거치 2년', 공영개발사업 등 '3년거치 5년' 구분상환 하던 것을
- '5년거치 10년' 구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함. (제10조)

○ 상환기간 만료공채이자 미지급규정 삭제

- 공채 상환기간 만료후의 이자 미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함 (제6조)

○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감면대상 조정

- 현행 공채매입대상을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축소하고 1,000cc미만 경차 구입·이전시 공채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,
- 공채매입 감면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공채매입대상 축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함. (제5조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중금리가 3%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융자대상사업을 정보통신기술(IT), 생명공학기술(BT),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,

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“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”과 “매입면제 대상”을 축소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도내 자치단체가 용자조건과 상환절차가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금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고,

어렵게 조성한 2,300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며,

특히,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공채발행 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되는 등 기금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바

앞으로의 기금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